



중국 물류분야의 외국인투자환경

2005.11.17

(주) 엠케이차이나컨설팅
대표이사 / 변호사 이만수

Contents

I

물류의 개념 및 분류

II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 역사 및 현황

III

중국 물류산업 정책 및 관련 법령

IV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설립

V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중국투자 현황 및 전망

I. 물류의 개념 및 분류

● 물류의 개념

<국가표준물류전문용어>상 물류의 개념:

물품의 공급지로부터 수령지로의 실제적인 유통과정 중 발생하는 운송·저장·적하·운반·포장·유통가공·배송·정보처리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 이에 따른 물류의 분류는 공급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 회수 물류, 폐기물 물류, 녹색 물류, 기업 물류, 사회 물류, 군사 물류, 국제 물류, 제3자 물류, 맞춤형 물류, 가상 물류 등으로 구분된다.

● “외국인투자물류기업”의 개념

<외국인투자물류기업시험설립업무추진에 관한 통지>상 외국인투자물류기업의 개념:

외국인 투자자가 중외합자 및 중외합작 형식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실제 수요에 따라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가공·포장·배송·정보처리 및 수출입 등의 단계를 선택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비교적 완벽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사용자를 위하여 다기능의 일체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정의.

II.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 역사 및 현황

- **1949년 ~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이전, 집중된 계획경제관리체제 실시

- 상품의 보관·운수는 주로 대규모 도매기업이 독점적 담당
- 생산기업이나 소매기업의 창고나 운송도구가 비교적 적음

- **1979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

-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하면서 현대물류의 개념 및 관리방식이 중국에 도입되기 시작함

- **90년대 이후:** 개혁개방 심화, 종합운송체계 형성, 생산·유통·소비분야 전반 변화발생

주로 4 가지 형태의 물류서비스기업 등장

1. 상업·물자중계기업이 기존 저장시설을 이용, 물류배송센터를 설립해 물류배송서비스 제공
2. 교통운송기업과 화물운송대리기업이 업무경영범위를 확대하여 “Door to Door” 운송 전개
3. 생산기업 자체가 원자재 또는 제품에 대한 공급업무를 전부 담당한 것
4. 소수의 전문적인 물류서비스 기업등장 - 체인점 대리배송, 항공속달운송과 빠른 우편서비스 등 영역

- **2000년 이후 :** 운송업 물류기업, 창고형 물류기업 및 종합형 물류기업들의 신속한 발전

1. 제3자 물류기업의 영업액이 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록 높지 않지만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음
2. 물류시장의 빠른 세분화 경향
3. 물류기업과 제조기업, 유통기업은 신속하게 전략적인 연맹을 구성하고 있음

III. 중국 물류산업정책 및 관련 법령

- 《상업물류과학기술사업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 (1992.1.20) 상업부
 - 중국이 최초로 물류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제정한 국무원 부문 규장(規章)
- 《국가중점발전산업 · 상품 및 기술목록》 (2000.7. 27) 국가발전계획위
 - 물류배송센터의 발전방향이 내용에 포함됨
- 《운송기업이 종합물류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일부 의견》 (2001.2.28) 교통부
 - 외국인 투자자가 중외합자, 합작 형태로 연해, 하천, 도로운송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
- 《중국 현대물류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2001.3.1) 국가경제무역위 등
 - 현대물류서비스네트워크 구축 목표(선진물류관리기술, 장비 적극채용)설정
- 《현대물류사업중점기업과의 연계제도를 확립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01.8.30) 국가경제무역위
 - 정부와 기업간의 소통과 연계를 통해 물류발전 추진, 제1자동차그룹 등 34개 중점 기업 확정
- 《중국현대물류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 (2004.8.5)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기업등록 규범화,물류기업세수관리제도개선, 시장질서정돈 등을 통해 물류업 발전 촉진

IV.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설립(1)

1. 기본법: '외국인투자 물류기업 시험설립 업무추진에 관한 통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2년)

2. 외국인투자물류기업의 설립조건

(1) 국제유통물류업

외국인투자물류기업의 투자자 중에서 적어도 일방은 국제무역, 국제화물운송 또는 국제화물운송 대리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투자자는 반드시 중국측 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 중의 최대주주여야 함

(2) 제3자 물류업(국내 도로망을 이용한 물류업)

외국인투자물류기업의 투자자 중에 적어도 일방은 교통운송이나 물류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투자자는 반드시 중국측 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 중의 최대주주여야 함

(3) 기타 조건

- 1) 등록자본금이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 2)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3) 고정된 영업장소, 업무 시설 구비해야 함

IV.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설립(2)

3. 외국인투자물류기업의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 물류기업 설립 시 제출서류

- 1) 신청서
- 2) 타당성 연구보고서
- 3) 합영 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물류기업 설립 요건에 부합된다는 자격증명 또는 관련 설명서
- 4) 중외투자자의 법률증명서류 및 자산신용 증명
- 5) 계약, 정관
- 6)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의 구성원 및 주요 관리인원의 명단과 약력
- 7)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출한 기업명칭 예비 승인 통지서
- 8) 기업경영장소 관련 증명서
- 9) 기타 대외무역경제주무부서가 요청하는 자료

심의비준 절차

심사과정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의 대외경제주무부서에 접수 근무일 기준 10일 내 예비심사 의견제시



국무원 대외무역 경제주무부서에 보고



국무원 대외무역경제주무부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 승인여부 서면결정

추후절차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국무원 대외무역경제주무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무원 대외무역경제주무부서에 국제화물운송 대리기업 승인증서 신청함

IV.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설립(3)

4.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경영범위

(1) 국제 유통 물류 업무

화물 수출입 업무의 자체경영 또는 대리와 수출가공기업으로부터 위탁 받은 대리수출입 업무를 포함하는 수출입업무와 관련 서비스, 그리고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수출입화물의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

(2) 제3자 물류 업무

육상보통화물 운송, 보관, 하역, 가공, 포장, 배송 및 관련 정보처리서비스와 자문업무, 국내화물운송대리업무,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한 물류의 관리 및 운용

5.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경영기한 및 적용지역

(1) 경영기한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원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2) 적용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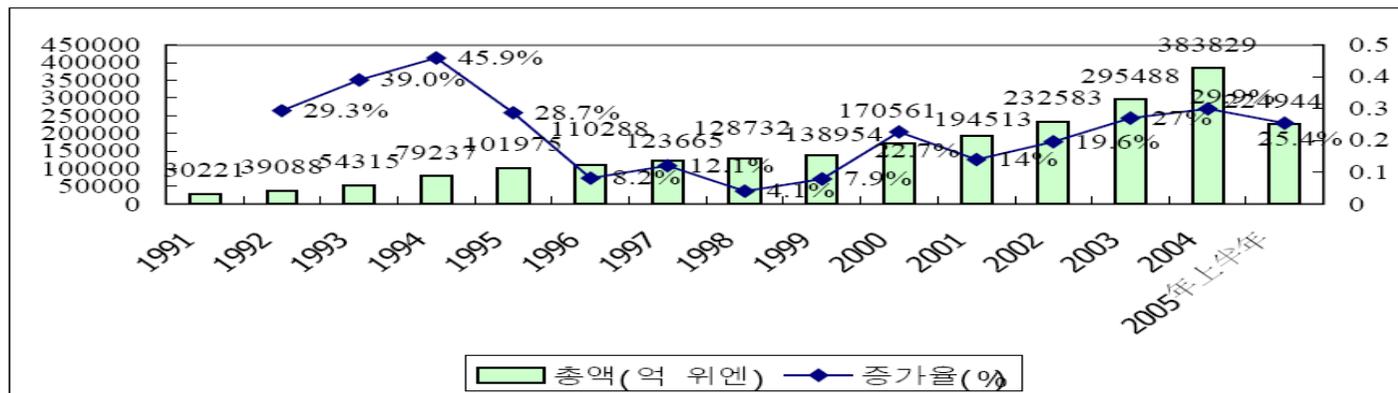
외국인투자물류기업 시험설립 지역은 상무부가 규정하며, 잠정적으로 북경, 천진, 상해, 중경 4개 직할시와 절강, 강소, 광동의 3개 성 및 심천경제특별구 지정

V.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중국투자 현황 및 전망 (1)

1. 중국 물류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1) 중국 물류업 발전 현황

<중국사회 물류 총액 및 증가율 현황>



-2005년 들어 증가속도가 둔화추세를 나타내기 시작, 상반기 증가율은 25.4%로 2004년 동기와 비교하여 6.7% 하락을 기록하였음.

- 물류운행의 시각에서 본다면 중국의 경제발전은 고속성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됨.

V.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중국투자 현황 및 전망 (2)

<2005년 상반기 중국물류 관련산업의 물류용 고정자산 투자 현황>

	2005년 상반기			2004년		
	투자액 (억 元)	증가율	물류고정자산 투자 점유비중	투자액 (억 元)	증가율	물류 고정자산 투자 점유비중
교통운수업	2858	24.5%	82.9%	6039	23.3%	82.9%
창고업	159	34.4%	4.6%	343	12.3%	4.7%
무역업	406	39.8%	11.8%	830	39.7%	11.4%
배송, 가공, 포장업	18	47.9%	0.5%	34	17.3%	0.5%
郵政業	6.5	-18.8%	0.2%	37	18.3%	0.5%
합 계	3447.5	26.5%		7283	24.3%	

-2005년 상반기, 중국의 물류관련 산업부문 고정자산 투자액은 총 3,447억 위안 정도로 동기 대비 26.5%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2004년보다 2.9% 상승하여, 전국 평균투자 증가속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 2004년 물류용 고정자산 투자 증가속도와 비교해 볼 때, 창고업, 배송, 유통가공, 포장업은 명확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통운수업과 무역업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며, 郵政業은 오히려 -18.8% 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

V.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중국투자 현황 및 전망 (3)

(2) 중국 물류업의 문제점

○ 물류에 대한 병목심각:

철로, 해상, 수로운송, 항구화물 처리 능력 등이 아직 상당히 부족

○ 성숙되지 못한 사회물류:

2004년 중국의 화물운송 총량은 미국의 40%에 불과, 부가가치가 낮고 물류비용이 높음

○ 물류의 종합적 협조 능력 미약:

전국을 총괄하는 거시적 물류계획 결여, 기본적인 사회물류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지 못한 단계

2.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중국 투자 현황 및 전망

(1)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중국 투자 현황

- 대형 외자 물류기업의 중국 내 독자기업화 추세 예) USP, TNT, FedEx, 일본 日通 등
- 물류부동산, 물류정보, 물류보험 등 관련 영역에서의 외자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북경, 상해, 천진, 심천 등 도시 현대물류를 경제발전 지주산업 또는 신흥산업으로 지정

V.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중국투자 현황 및 전망 (4)

(2) WTO 가입 약정안에 따른 개방일정

- 2004년 12월 11일부터 도로화물운송, 창고, 해상운송 및 선박대리 등 영역에서 외상의 진입조건 완화
- 2005년 12월11일부터, 외자 물류기업의 소유권 제한 철폐, 외국계 택배기업의 중국 내 독자기업설립 허용예정
- 2005년 12월 11일부터 도로운송, 창고, 화물운송 대리 등 영역에 대해 독자 혹은 합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도로, 수로운송, 화물운송, 컨테이너 하역 등의 업무를 개방 예정

(3) 중국 물류시장 대외개방 일정

자료: Post-WTO accession regulation

분야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해운/포워딩	-	50% 이상	75% 이상	종합물류회사1급대리점 CEPA(100%)	국제화물수송 100% 가능	-
하역/통관	합작투자 허용	50% 이상	-	-	-	-
철도수송	50%미만 합자투자 허용	50% 이상	50% 이상	-	-	100% 가능
도로수송	50%미만 합자투자 허용	50% 이상	-	100% 가능	-	-
창고보관	50%미만 합자투자 허용	50% 이상	-	100% 가능	-	-
특송	-	50% 이상	-	-	100% 가능	-

V.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중국투자 현황 및 전망 (5)

(4) 중국 물류업의 향후 전망

- 향후 10-20년 중국 물류업 발전의 황금기 예상 : 중국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에 수반
- 세분화 가속 예상 : 항구물류, 자동차물류, 할인점물류, 의약품물류, 식량물류, 냉동물류, 가전물류 등
- 국유, 민영, 중외합자와 외상독자 기업의 활동영역 고착화 및 경쟁, 마찰 확대 예상
- 물류의 국제화, 시장화, 전문화, 표준화, 정보화, 법제화 진행 예상
- 물류신기술 확보 및 관련 인재교육 프로젝트의 발전 가속화

(5)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중국 진출전략

○ 투자방식

독자 혹은 증자에 의한 지분인수로 합자기업 통제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꾀할 것

○ 서비스 대상

과거 중국내 외국기업만을 대상해 물류서비스를 공급하던데서 서비스 범위를 로컬기업까지 확대할 것

○ 투자지역

중국의 경제성장 주축역할을 하는 창장(長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환보하이(環渤海)경제권 등 지역의 물류시장을 선점한 후 '공격의 화살'을 동북3성과 중서부지역으로 돌릴 것

○ 지역본부를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설립할 것

감사합니다!

MKCHINA CONSULTING

Thanks For You!!!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 www.mkchina.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3층
(tel) 02-780-3036~7 (fax) 02-780-2365
고객상담메일 : mkchina@mkchina.com

北京万韩咨询有限公司
中国北京市朝阳区麦子店街37号北京盛福大厦1350室
(tel) 86-10-8527-5071 (fax) 86-10-8527-5074